제323회 남양주시의회(정례회)
제1차 문화복지위원회

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.

문화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조 공 선

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1. 제안경과

○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○ 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대　　상 : 남양주시복지재단

○ 기　　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

○ 출연금액 : 금952,652,000원(금구억오천이백육십오만이천원)

○ 내　　용 : 남양주시복지재단 인건비, 운영비 및 사업비 교부

[출 연 내 역]

(단위 : 천원)

구　분	2026년	2027년	증　감	비　고
계	933,626	951,152	19,026	2026년 대비 2.04% 증액
인 건 비	748,847	807,487	58,640	직원 보수 인상률(3.9%) 반영
운 영 비	142,779	108,565	△34,214	운영비 최소 소요액 반영
사 업 비	42,000	35,100	△6,900	사업 예산 일부 감액 반영

○ 주요 증감 사유

- 인건비 : 직원 보수 인상율 3.9% 반영　※ 공무원 보수 인상률 기준
- 운영비 : 일반수용비 감액 편성 등 운영비 최소 소요액 반영

4. 참고사항

가. 참고자료

○ 명　　칭 : 남양주시복지재단

○ 설 립 일 : 2020. 12. 2.

○ 소 재 지 :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(다산동, 다산행정복지센터 내)

○ 조직구성

- (재　단) 1실 2부 / 11명 (대표이사1, 복지실장1, 직원9)
- (임　원) 총 12명 [이사 10명(대표이사1, 당연직1 포함), 감사2명]

○ 주요사업

- (조사・연구) 남양주시 복지 수요조사・연구를 통한 맞춤형 복지시책 개발
- (모금・배분) 공동모금회 연합모금 활성화 및 나눔사업 기획 추진
- (민・관협력) 민간 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및 복지정책포럼 개최 등

○ 출연금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　분		2026년	2027년	비교증감	비　고
계		933,626	**952,652**	19,026	**2.04% 증액**
① 인건비		748,847	**807,487**	58,640	
급여		427,272	**456,101**	28,829	
제수당	정액급식비	18,480	**21,120**	2,640	
	가족수당	6,600	**5,040**	△1,560	
	시간외근무수당	53,086	**59,270**	6,184	
	정근수당가산금	4,600	**4,560**	△40	
	정근수당	11,506	**14,349**	2,843	
	명절휴가비	30,036	**32,423**	2,387	

	연가보상비	4,907	**5,381**	474	
퇴직적립금		48,616	**52,096**	3,480	
직무수행경비 (직급보조비)		26,940	**26,940**	-	
연금부담금 등		66,402	**73,759**	7,357	
평가급(성과금)		50,402	**56,448**	6,046	
② 운영비		142,779	**108,565**	△34,214	
일반 운영비	사무관리비	94,712	**59,617**	△35,095	
	공공운영비	13,499	**13,356**	△143	
	교육훈련비	500	**800**	300	
	회의비	1,500	**1,500**	-	
	시간 외 급식비	5,832	**5,832**	-	
여 비		5,280	**5,280**	-	
업무추진비		12,000	**12,000**	-	
수선유지비		500	**1,500**	1,000	
관서 업무비	정원가산 업무비	880	**880**	-	
	부서운영 업무비	2,100	**2,100**	-	
위탁관리비		5,976	**5,700**	△276	
③ 사업비		**42,000**	**35,100**	**△6,900**	
나눔홍보사업		24,000	20,000	△4,000	
사랑의 온도탑		10,000	10,000	-	
복지시설 컨설팅		4,000	2,100	△1,900	
안심케어		4,000	3,000	△1,000	
④ 기타예산		**0**	**1,500**	**1,500**	
기타협의체등부담금		0	1,500	1,500	항목변경

나. 관련법령 : 붙임

다. 관련부서 : 통합돌봄과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「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

○ 2027년도 출연금은 952,652천원으로 2026년도 933,626천원 대비 19,026천원(2.04%) 증가하였으며, 인건비는 직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58,640천원 증가한 반면, 운영비는 34,214천원, 사업비는 6,900천원 각각 감소하였고 기타예산 1,500천원이 신규 반영됨

○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지역 복지수요에 대한 조사·연구, 모금·배분 및 민·관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출연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

○ 다만, 전체 출연금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인건비가 증가한 반면 운영비와 사업비는 감소한 만큼, 사업비 감액이 재단의 주요 사업 수행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과 인건비·운영비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

○ 아울러 출연 동의는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인 만큼, 구체적인 출연 규모와 세부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은 향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 그 밖에 관계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붙 임 관계법령

☑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☑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「민법」또는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奬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

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☑ 「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11조(출연금 등 교부)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